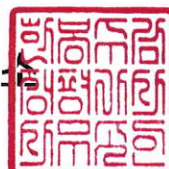


감정평가서

건명	이상진 소유물건 (2025타경30849)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서 번호	H2505-1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한봉수

한봉수 (인)


감정평가액	구천일백구십만사천원정 (₩91,904,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상진 (2025타경30849)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5.23	2025.05.23	2025.05.23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632	토지	2,632	-	91,904,000
합계					₩91,904,000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단 가	금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293	전	계획관리지역	337	337	26,000	8,762,000	
2	상 동	297	전	계획관리지역	1,246	1,246	28,000	34,888,000	
3	상 동	1183-6	답	농림지역	1,049	1,049	46,000	48,254,000	
	합 계			이	하	여	백	₩91,90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5월 23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5년 05월 23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 이용상황 및 본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감정평가의 조건

.

6. 기타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에는 지적측량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생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므로 당해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 토지 개요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지세
1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293	전	337	계획관리	휴경지	부정형 완경사
2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297	전	1,246	계획관리	휴경지	부정형 완경사
3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1183-6	답	1,049	농림지역	답	세장형 평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본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본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A	부계리 299	1,458	전	전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완경사	8,270
B	부계리 1285	3,055	답	답	농림지역	세로(불)	세장형평지	27,500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5년 01월 01일임.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비고
A	경상남도 진주시 (25.01.01~25.05.23) (계획관리) 2025.01.01 ~ 2025.03.31 : 0.315 2025.03.01 ~ 2025.03.31 : 0.081 $(1 + 0.00315) * (1 + 0.00081 * 53/31)$ ≒ 1.00454
B	경상남도 진주시 (25.01.01~25.05.23) (농림) 2025.01.01 ~ 2025.03.31 : 0.056 2025.03.01 ~ 2025.03.31 : 0.028 $(1 + 0.00056) * (1 + 0.00028 * 53/31)$ ≒ 1.00104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0

(4) 개별요인 비교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규제의 정도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

기호	표준지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요인 비교치	의견
1	A	—	0.90	1.00	0.85	1.00	1.00	0.765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및 획지조건(경작의 편부)에서 열세함.
2	A	—	0.95	1.00	0.85	1.00	1.00	0.808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및 획지조건(경작의 편부)에서 열세함.
3	B	—	1.02	1.00	1.00	1.00	1.00	1.020	접근조건(교통의 편부)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 28) 및 대법원판례(98두6067, 92누16300 등)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가격조사자료

(가) 인근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 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비고
(1)	사봉면 부계리 ***_*	계획관리	전	2024.08.01	담보	36,000	-
(2)	사봉면 부계리 ***	계획관리	전	2022.10.03	경매	28,000	-
(3)	사봉면 부계리 ****_*	농림지역	답	2024.05.31	경매	45,000	-
(4)	사봉면 부계리 ****_*	농림지역	답	2022.10.03	경매	45,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나) 인근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 목	거래시점	토지단가(원/㎡)	비고
#1	이반성면 평촌리 ***	계획관리	전	2024.11.12	30,210	-
#2	사봉면 봉곡리 ***	농림지역	답	2022.04.26	44,000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가)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나)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에서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

(다)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① 비교표준지 A / 사례 기호 (1)

구분	단 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격차율	보정치 결정
사례기준 표준지가격	36,000	1.01074	1.000	0.950	34,567	4.161	4.16
기준시점 표준지가격	8,270	1.00454	—	—	8,308		
시점수정	경상남도 진주시 계획관리 2024.08.01 ~ 2025.05.23						
지역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함.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환경)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	1.00	1.00	0.95	1.00	1.00	0.950
표준지는 사례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비교표준지 B / 사례 기호 (3)

구분	단 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격차율	보정치 결정
사례기준 표준지가격	45,000	1.00416	1.000	1.000	45,187	1.641	1.64
기준시점 표준지가격	27,500	1.00104	—	—	27,529		
시점수정	경상남도 진주시 농림지역 2024.05.31 ~ 2025.05.23						
지역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함.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환경)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	1.00	1.00	1.00	1.00	1.00	1.000
표준지는 사례와 대체로 유사함.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기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원/㎡)
	기호	공시지가 (원/㎡)						
1	A	8,270	1.00454	1.000	0.765	4.16	26,438	26,000
2	A	8,270	1.00454	1.000	0.808	4.16	27,924	28,000
3	B	27,500	1.00104	1.000	1.020	1.64	46,050	4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1, #2를 비교거래 사례로 선정함.

(2)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0

(3)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비 고
#1	경상남도 진주시 (24.11.12~25.05.23) (계획관리) 2024.11.01 ~ 2024.11.30 : 0.089 2024.12.01 ~ 2024.12.31 : 0.121 2025.01.01 ~ 2025.03.31 : 0.315 2025.03.01 ~ 2025.03.31 : 0.081 $(1 + 0.00089 * 19/30) * (1 + 0.00121) * (1 + 0.00315) * (1 + 0.00081 * 53/31)$ ≒ 1.00632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거래사례	비 고
#2	경상남도 진주시 (22.04.26~25.05.23) (농림) 2022.04.01 ~ 2022.04.30 : 0.075 2022.05.01 ~ 2022.05.31 : 0.153 2022.06.01 ~ 2022.06.30 : 0.167 2022.07.01 ~ 2022.07.31 : 0.105 2022.08.01 ~ 2022.08.31 : 0.097 2022.09.01 ~ 2022.09.30 : 0.085 2022.10.01 ~ 2022.10.31 : 0.085 2022.11.01 ~ 2022.11.30 : 0.058 2022.12.01 ~ 2022.12.31 : 0.026 2023.01.01 ~ 2023.12.31 : 0.326 2024.01.01 ~ 2024.12.31 : 0.468 2025.01.01 ~ 2025.03.31 : 0.056 2025.03.01 ~ 2025.03.31 : 0.028 $(1 + 0.00075 * 5/30) * (1 + 0.00153) * (1 + 0.00167) * (1 + 0.00105)$ $* (1 + 0.00097) * (1 + 0.00085) * (1 + 0.00085) * (1 + 0.00058) * ($ $1 + 0.00026) * (1 + 0.00326) * (1 + 0.00468) * (1 + 0.00056) * (1 +$ $0.00028 * 53/31)$ ≒ 1.01699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자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자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4)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기호	사례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요인 비교치	의견
1	#1	—	0.90	1.00	0.95	1.00	1.00	0.855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및 획지조건(경작의 편부)에서 열세함.
2	#1	—	0.95	1.00	0.95	1.00	1.00	0.903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및 획지조건(경작의 편부)에서 열세함.
3	#2	—	1.02	1.00	1.00	1.00	1.00	1.020	접근조건(교통의 편부)에서 우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기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원/㎡)
	기호	토지단가 (원/㎡)						
1	#1	30,210	1.000	1.00632	1.000	0.855	25,993	26,000
2	#1	30,210	1.000	1.00632	1.000	0.903	27,452	27,000
3	#2	44,000	1.000	1.01699	1.000	1.020	45,643	4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1) 토지 시산가액 검토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m 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m ²)	비고
1	26,000	26,000	-
2	28,000	27,000	-
3	46,000	46,000	-

(2)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4.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적용단가(원/m ²)	면적(m ²)	감정평가액(원)	비고
1	26,000	337	8,762,000	-
2	28,000	1,246	34,888,000	-
3	46,000	1,049	48,254,000	-
합계	-	2,632	91,904,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아래의 금액을 본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분	감정평가액(원)
토 지	91,904,000 

2. 기타 참고사항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이 소재하는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부정형,완경사 토지로 휴경지상태임.

기호 3: 세장형, 평지 토지로 답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 불리농지

기호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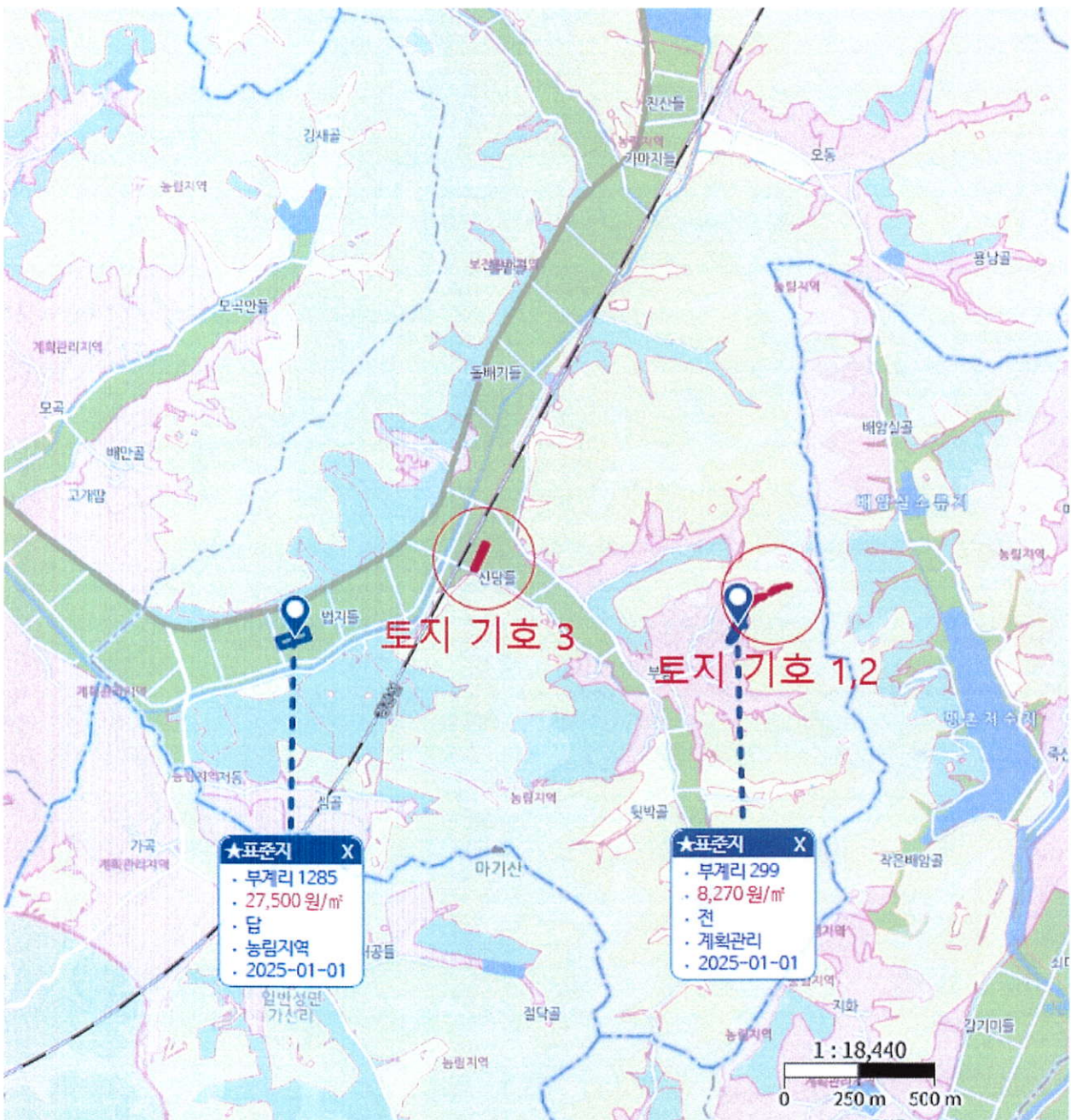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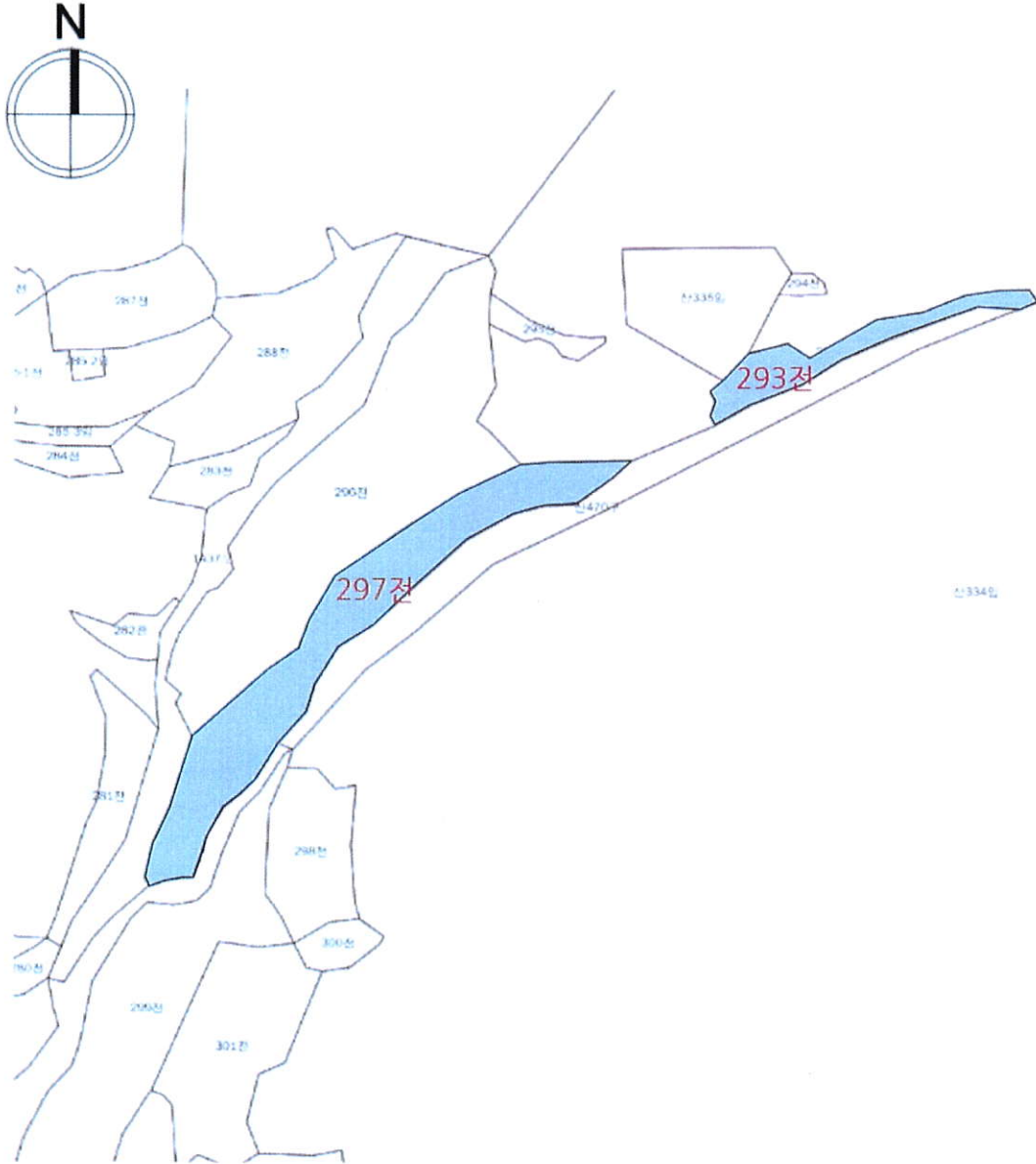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람.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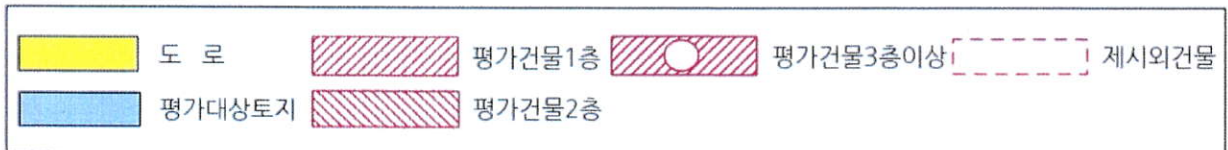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293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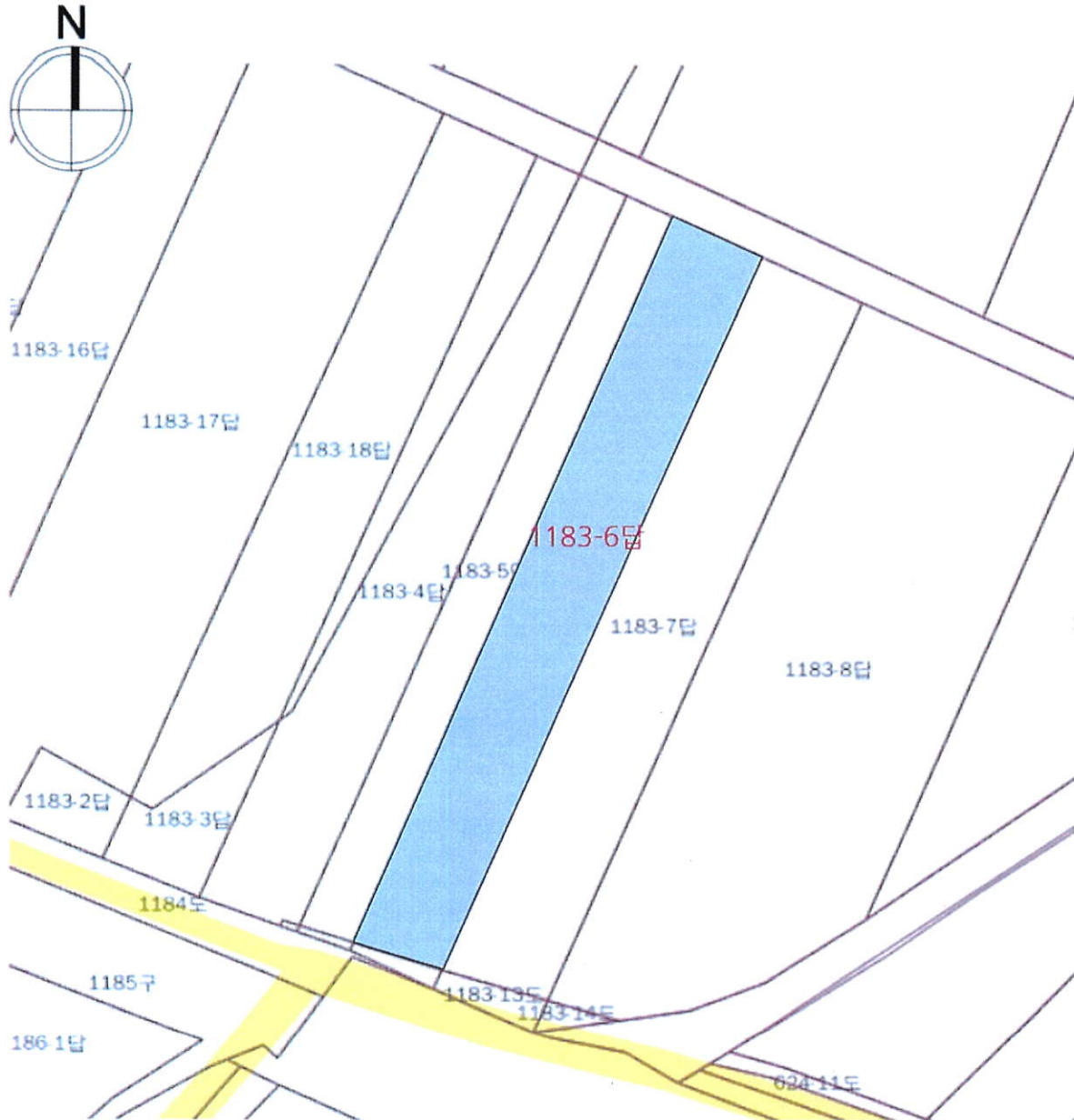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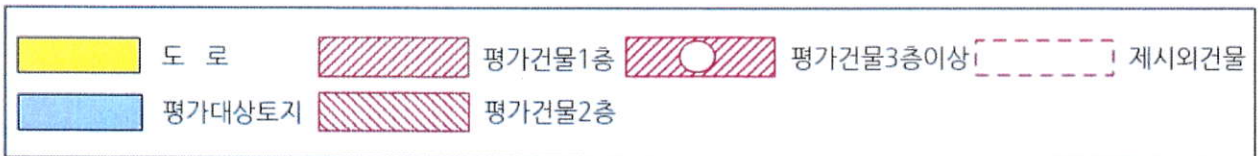
* 본 개황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로 도시한 '참고용'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 적 개 황 도



* 본 개황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로 도시한 '참고용'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 진 용 지



토지 기호 1 사진



토지 기호 2 사진

사 진 용 지



토지 기호 3 사진